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등〉

■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78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사무직원의 정의 구체화 등(안 제22조)	5
2.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 대상 확대(안 제30조)	10
3.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확대 등(안 제31조)	13
4. 변호사와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제 신설(안 제34조, 제35조, 제115조의2)	18
5.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 설치(안 제89조의3)	23
6.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기간 조정(안 제89조의4)	27
7. 법무법인 등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기간을 3년으로 제한 (안 제89조의6, 안 제117조)	29
8. 변호사 징계 기준 마련(안 제92조의3)	32
9. 벌칙 및 과태료	35
가. 벌칙 강화(안 제112조의2, 안 제113조)	35

나. 양벌규정 추가(안 제115조)	38
다. 과태료 신설(안 제117조제1호)	42
 ※ 참고자료	 45
1.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4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4. 7. 10.
3. 회부연월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직퇴임변호사는 일정기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관예우나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 이른바 “몰래 변론”과 같은 음성적 변호활동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으로 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객관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정의 명확화 등(안 제22조제1항, 안 제22조제6항 신설)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나. 연고(緣故) 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안 제30조)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연고 관계를 선전해서는 아니 되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재판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도 추가하고, 조사·감독·규제 또는 제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의 공무원 및 소속 직원을 추가함.

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등(안 제31조제3항 및 제89조의4제1항)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 및 취업심사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퇴직한

날부터 1년에서 각각 3년 및 2년으로 확대함.

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3년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변호사와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제 신설(안 제34조, 제35조)

마.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안 제89조의3제5항 신설)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회의 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두도록 함.

바.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안 제92조의3 신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사.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대리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등의 경우 처벌을 강화함(안 제112조의2).

아.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등의 업무에 관하여 사전에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금품·향응을 요구하

는 경우 등에는 법무법인 등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안 제115조).

Ⅲ. 검토의견

1. 사무직원의 정의 구체화 등(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u>사무직원을</u> 둘 수 있다.	제22조(사무직원) ① ----- ----- <u>사무직원(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단,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나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u> -----.
② ~ ⑤ (생략) <u><신설></u>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변호사는 사무직원(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u>

- 개정안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을 ① 사무소에 소속되어 ② 업무에 관하여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③ 그 대가로 금품 또는 경

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명시하고(안 제22조제1항), 사무직원에 대한 변호사의 지도·감독책임을 규정함(안 제22조제6항).

- 사무직원은 서무, 경리, 운전자, 사환 및 기타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등을 말하는데,¹⁾ 현행법은 사무직원을 채용한 변호사 등에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무직원이 사건 수임을 위하여 연고관계 등을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사무직원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음.²⁾

<사무직원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 연고관계 등의 선전 금지(제30조)
- 법률사무 수임 목적 이익 제공 또는 제공 약속 금지(법 제34조제2항)
-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무 수임 등 금지(법 제34조제3항)
- 사건 유치 목적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병원 출입 금지(제35조)
- 판사, 검사 등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금지(제110조)

- 개정안은 사무직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현행법상 사무직원에 대한 규제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려는 취지가 있다

1)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대한변호사협회 내규) 제2조(종류) ① 사무직원의 종류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2종으로 한다.
② 일반직 사무직원은 서류의 작성, 보관, 제출, 기록관리, 서무, 경리, 기타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한다.
③ 기능직 사무직원은 운전자, 타자원, 사환 기타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제22조(사무직원)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研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단서로서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나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는 사무직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격사를 전문자격사로 불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안 제22조제1항에 대해, ‘사무직원’에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이하 ‘사실상의 사무직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취지 및 체계에 반할 우려가 있고(사실상의 사무직원을 인정함으로써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22조제2항³⁾의 형해화), 사실상의 사무직원의 신분법 인정 여부 등에 있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개의 규제별로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3) 「변호사법」 제22조(사무직원)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항 단서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가 사무직원 등록 없이 활동하는 이른바 법조브로커를 사무직원으로 포섭하여 법조윤리 관련 각종 규제의 수범자로 상정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를 사실상의 사무직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 개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문자격사의 예시로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를 들고 있을 뿐 이외에 어떠한 전문자격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22조제1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안 제22조제6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도 일견 인정될 수 있는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할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임.⁴⁾⁵⁾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무직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인력을 전통적인 사무직원의 범주에 일률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변호사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활동을 위축하여 그

4) 현행법상 변호사의 사무직원은 사건 수임을 위하여 연고관계를 선전하거나, 사건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법 제30조, 제34조제2항), 사무직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 변호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어(법 제91조제2항)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임.

5) 법원행정처 의견회신(2024. 8.)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

나아가 기본적으로 사무직원을 비롯하여 변호사가 채용하는 인력에 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규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오히려 이를 확대함으로써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⁶⁾

6) 대한변호사협회 의견회신(2024. 9.)

2.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 대상 확대(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 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 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u>재판</u> <u>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u> 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 ----- <u>다음</u> <u>각 호의 사람</u> ----- ----- ----- -----. <u>1. 다음 각 목의 기관에 근무하는</u> <u>공무원</u> <u>가. 재판기관</u> <u>나. 수사기관</u> <u>다. 공정거래위원회</u> <u>라. 국세청</u> <u>마. 그 밖에 조사·감독·규제</u> <u>또는 제재 등을 소관 업무로</u> <u>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기관</u> <u>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근무하는</u> <u>소속 직원</u> <u>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u> <u>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u> <u>독원</u> <u>나. 그 밖에 조사·감독·규제</u> <u>또는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u> <u>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기관</u>
<u><신 설></u>	

현행	개정안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 ----- -----. 1. (현행과 같음) 1의2. ----- -- 제29조, 제30조----- ----- 제58 조의30에서 준용하는 ----- -----

- 개정안은 변호사 및 사무직원이 수임을 위해 재판·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은 변호사 및 사무직원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벌금이나 과태료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는 대상자의 범위를 조사·감독·규제 또는 제재에 관련된 기관에 소속된 자까지 확대하고, 선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여 해당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최근 변호사는 민사·형사사건 송무(訟務)뿐 아니라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과 같이 다양한 영역으로 그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고관계 등의 선전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임.

- 법원행정처는 공직과의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을 근절시키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하는 공무원’이기만 하면 그 사람과의 연고관계 등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되는 바, 현재 재판업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모두 해당되어 그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되므로 이와 같이 그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⁷⁾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만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던 상황에서 나아가 다방면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연고관계 선전 금지 의무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어 개정안에 찬성하나, 다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변호사에 대한 과태료는 ① 변호사 징계절차에 의한 경우와 ②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의한 경우로 이원화되어 있어 양자의 관계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변호사징계절차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⁸⁾

7) 법원행정처 의견회신(2024. 8.)

8) 대한변호사협회 의견회신(2024. 9.)

3.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확대 등(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수임제한) ①·② (생략)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수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에 위한 경우나 사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퇴직한 날부터 3년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제1호의 등록재산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였던 공직퇴

현행	개정안
④ (생략)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임변호사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퇴직한 날부터 2년</u> 3. <u>그 밖의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퇴직한 날부터 1년</u>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제89조의4 및 제89조의9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직퇴임변호사로 보지 아니한다. 1. <u>재판연구원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u> 2. <u>사법연수생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u> 3. <u>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무한 군인·공익법무관 등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u> 4. <u>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제한기간 중에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사람</u>

- 개정안은 법관, 검사,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 중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대상사건 및 수입제한기간을 확대하고, 해당 공직퇴임변호사가

재직한 공직에 따라 그 수임제한 대상사건의 범위 및 수임제한기간을 차등화하려는 것임.

- 수임제한 대상사건 및 수임제한기간이 확대되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이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 등임.⁹⁾

<수임제한 대상사건 및 수임제한 기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재산공개대상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그 외
수임제한 대상사건	퇴직 1년 전까지 재직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퇴직 3년 전까지 재직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퇴직 2년 전까지 재직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퇴직 1년 전까지 재직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 제한기간	퇴직 후 1년간	퇴직 후 3년간	퇴직 후 2년간	퇴직 후 1년간
대상자	공직퇴임변호사 전원	정무직공무원, 1급 국가공무원,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등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	이외 공직퇴임변호사

9)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참조

- 현행법은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때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대상사건 및 수임제한 기간은 해당 변호사가 재직하던 공직의 성격이나 기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재직한 공직의 직급이나 성격에 맞추어 수임제한 대상사건과 기간을 각각 달리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한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공직퇴임변호사가 업무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봉쇄하려는 수임제한의 취지를 실현하면서도 그 위험성에 비례한 수임제한을 두려는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이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업무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위험도를 고려하여 수임제한 대상기관의 범위와 수임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수임제한은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볼 수 있어 구체적인 수임제한 대상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과 영업의 자유를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고, 전관예우 등의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을 고

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한편, 안 제31조제5항은 변호사시험합격자로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연수를 받는 기간 중에 퇴직한 변호사는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은 해당 기관에 단기로 재직하여 특별한 연고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해당 공직에 재직한 경위에 비추어 타당한 조치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자료 제출기간의 연장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개정안에 의할 때 일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및 수임제한 대상사건의 범위가 현행에 비하여 급격하게 확대되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임제한의 기간이나 대상사건 범위가 과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퇴직 당시의 직위 등에 따라 수임제한의 기간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원칙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 및 개정내용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나, 재산공개대상자의 수임 제한에 대해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것은 아닌지와, 제한의 기준을 정한 근거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¹⁰⁾

10) 대한변호사협회 의견회신(2024. 9.)

4. 변호사와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제 신설 (안 제34조, 제35조, 제1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 ----- ----- ---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u>변호사나 그 사무직원</u> 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1. ----- ----- ----- ----- <u>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u> ----- -----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u>변호사나 그 사무직원</u> 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 ----- <u>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u> ----- -----
② <u>변호사나 그 사무직원</u> 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u>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u> 은----- ----- ----- -----.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략)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 -----.
---	--

- 안 제34조는 누구든지 사전·사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의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거나,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34조제1항),

변호사의 고용인은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34조제2항), 변호사의 고용인이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안 제35조는 변호사의 고용인이 사건 유치의 목적으로 법원, 수사 기관, 교정기관 등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현행법은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게 대해서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제30조), 사건의 소개·알선·유인의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제34조제1항 및 제2항), 변호사 아닌 자 등과의 동업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제34조제3항).
- 개정안은 변호사가 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사실상 고용한 경우에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 퇴직공무원으로서 고문(顧問) 등의 형태로 변호사에게 고용되었으나, 사무직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자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변호사와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이를 등록하지 않은 퇴직법관, 검사, 공무원 등 소위 ‘법조브로커’는 본인을 고용한 변호사를 위하여 연고를 선전하거나, 사건 유치 목적으로 법원, 검찰청, 경찰관서 등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에 출입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조사 단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고, 이들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상 명확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사실상 고용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바탕으로 계약의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인 것인지,¹¹⁾ 이를 넘어서서 추상적인 지시로서 위임한 경우까지 포함할 것인지 모호하다고 보임.

또한, 현행법은 ‘사무직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사무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이를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게 하는 등 일정한 규제 하에 변호사가 고용하는 자를 통제하고 있는데,¹²⁾ 개정안은 ‘고용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 기존 변호사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무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도 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없이 고용할 수 있다고 보일 여지가 있다고 보임.

1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2)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研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 법원행정처는 이른바 법조브로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법조윤리에 위반된 수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금지행위의 수범자 범위에 사무직원 외에 고용인(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22조제1항은 사무직원의 범위에 사실상의 사무직원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의 사무직원과 고용인(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의 사무직원 범위에서 전문자격사를 제외하고 있는데, 고용인이 위 전문자격사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¹³⁾

대한변호사협회는 ‘고용인’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해당 규정들은 변호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강력한 제재규정으로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제109조제2호¹⁴⁾)에서 제재대상 등이 명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상 고용관계까지 불명확한 고용인 개념에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규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¹⁵⁾

13) 법원행정처 의견회신(2024. 8.)

14)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15) 대한변호사협회 의견회신(2024. 9.)

5.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 설치(안 제89조의3)

현행	개정안
제89조의3(윤리협약회의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① ~ ④ (생략)	제89조의3(윤리협약회의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u>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등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윤리협약회의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둔다.</u>
⑤ <u>윤리협약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u>조직·운영과 제5항에 따른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u> -----.

-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두려는 것으로,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법원, 법무부, 변협이 그 위원을 각각 위촉하고 있음.¹⁶⁾
- 동 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

16)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9조의2(윤리협회의 구성) ① 윤리협회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공직자 활동내역 등을 제출받아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¹⁷⁾ 해당 조사에 따라 변협 또는 수사기관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¹⁸⁾에 비추어 볼 때, 동 협의회 내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두는 것은 해당 협의회 기능상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현행법은 윤리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의 근거를 두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관예우’나 ‘법조브로커’는 사실상의 용어로 법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7)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략)

④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④ 윤리협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⑤ 윤리협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법원행정처는 건전한 법조윤리를 형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미 공직퇴임변호사 등 특정 변호사들의 수임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고 사실조회, 자료제출 등 조사권과 징계개시 신청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설립취지를 실현하기에 그 위상과 권한, 조직 등 물적, 인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센터 설치만으로 그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 ‘전관비리신고센터’가, 법무부에는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신고 센터’가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윤리협의회에 센터를 별도로 설립할 경우 각 신고센터 간 업무분장 등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관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¹⁹⁾²⁰⁾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이, 변호사 징계사건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강화된 자율성을 인정하고 법무부등 국가기관에서는 징계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거나 대한변협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변협의 자율성을 해하고 있으며,

19) 아울러 법문에 일상적 용어인 ‘전관예우 비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석상 명확하지도 않은 용어이므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20) 법원행정처 의견회신(2024. 8.)

대한변협이 개정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를
개소(2021. 7. 19.)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
을 제시함.²¹⁾

21) 대한변호사협회 의견회신(2024. 9.)

6.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기간 조정(안 제89조의4)

현행	개정안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u>2년</u>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② ~ ⑤ (생략)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u> ----- ----- ----- -----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 3년 2. 그 밖의 공직퇴임변호사: 2년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공직퇴임변호사의 부정한 수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자료와 사건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 중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임자료 등의 제출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이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

그 외 공직퇴임변호사에게는 1년으로 각각 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의 제출 기간을 조정한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자료 제출기간의 연장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²²⁾

22) 법원행정처 의견회신(2024. 8.)

7. 법무법인 등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기간을 3년
으로 제한(안 제89조의6, 안 제117조)

현행	개정안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 ----- ----- ----- ----- ----- ----- ----- ----- ----- ----- 퇴직공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동안 매년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자료와 처리 결과에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개정안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1. ~ 2. (생략) 3.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 ----- -----. 9.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개정안은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채용된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지방변호사회에 매년 그 공직자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던 것을 해당 공직자의 퇴직일로부터 3년간만 제출하도록 기한을 설정하고(안 제89조의6제1항).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7조).

○ 현행법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²³⁾ 아닌 퇴직

23)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3(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법 제8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2. 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4. 중령 및 3급 군무원
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6.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공직자(이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등은 기한의 정함 없이 매년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법인등이 채용한 공직자의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 공직자의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직자를 채용한 법무법인 등이 그 공직자의 업무내역서를 기한의 정함이 없이 매년 제출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안과 같이 기한을 정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법무법인 등이 업무내역서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는 입법정책적 사항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기간을 제한할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²⁴⁾

8. 금융감독원의 3급 및 4급 직원
24) 법원행정처 의견회신(2024. 8.)

8.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안 제92조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2조의3(징계기준 마련)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징계 사유를 “이 법에 위반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²⁵⁾ 징계의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 요소를 규정하고

25)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있지 않아 징계 사유 및 정도에 대한 해석이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징계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임.

- 개정안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와 관련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징계권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징계기준의 적정성을 담보하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징계의 통일성·객관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나,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²⁶⁾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사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양정기준을 만들어 불편부당함이 없는 징계 양정을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과 같이 징계기준의 설치, 변경 등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징계권한을 법무부장관에서 변호사단체에 넘기고 변호사단체에 변호사징계에 대하여 법무부는 이의신청된 사건을 심의하도록 하여 변호사단체의 자율성과 변호사 직무수행

26) 법원행정처 의견회신(2024. 8.)

의 독립성을 확보한 취지 및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 1. 8.부터 「변호사징계양정규정」²⁷⁾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²⁸⁾

27) 「변호사징계양정규정」(2024. 1. 8. 규정 제18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변호사징계규칙 제31조의2에 의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의 변호사 징계의 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8) 대한변호사협회 의견회신(2024. 9.)

9. 벌칙 및 과태료

가. 벌칙 강화(안 제112조의2, 안 제113조)

- 개정안은 ① 변호사가 조세 포탈, 수입제한 등 관계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대리(소위 ‘몰래변론’)하거나,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입한 경우, ②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을 특정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경우 그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벌칙 강화>

○ 변호사가 조세 포탈, 수입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대리한 경우
○ 변호사로서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입한 경우
○ 재판·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 사건을 특정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유인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113조제4호, 제5호, 제7호	안 제112조의2제1호, 제2호, 제3호

- 개정안은 몰래변론 등 이른바 ‘변형된 전관예우’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이 그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행위는 위법한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한 행위이거나(안 제112조의2제1호), 사건의 성격이나 수임 경위가 수사나 재판 자체의 공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안 제112조의2제2호 및 제3호),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법정형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개별 범죄의 보호법익과 행위태양(行爲態樣)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²⁹⁾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³⁰⁾

29) 헌법재판소 1999. 5. 27. 96헌바16 결정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중 략)...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 아니 된다.

30) 법원행정처도 같은 취지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2024. 8.).

<법정형 현황>

구 분	사 유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09조)	○ 변호사 아닌 자의 영리 목적 법률사무 취급 등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10조)	○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등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11조)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 등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12조)	○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획소송 등을 하는 경우 ○ 허위사실로 변호사 등록을 한 경우 ○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 취급의 표시를 한 경우 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안 제112조의2)	○ 조세 포탈, 수입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변호,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호) ○ 공무원, 조정위원, 중재위원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제2호) ○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을 소개·알선 받은 변호사인 경우(제3호)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13조)	○ 연수 종료 전 변호사시험합격자의 단독 수임행위 ○ 국제변호사 표방 등 허위광고행위 등

나. 양벌규정 추가(안 제115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5조(양벌규정)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제2호[제34조제2항 및 제3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의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제2호(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변호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변호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안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과 변호사의 사무직원이 그 법무법인등 또는 변호사의 수임에 관련하여 소개·알선에 따른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제34조제2항), 변호사 아닌 자 등으로부터 수임을 알선받는 등의 행위로 처벌받는 경우(제34조제3항)³¹⁾, 양벌규정을 통해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변호사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양벌규정 적용대상>

-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변호사의 사무직원이 법무법인 등 또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법무법인 등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
 - 변호사 아닌 자로부터 법무법인 등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
 - 공무원 취급 사건의 청탁·알선 목적으로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부터 법무법인 등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
 - 타인 권리를 양수하는 등의 행위로 권리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법무법인 등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



법무법인등 또는 변호사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주의·감독의무 상당한 이행 여부에 따른 면책 가능)

31)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안은 법무법인등 또는 변호사의 업무로서 수임행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직무상 감독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법무법인등 또는 변호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통해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은 바로 해당 법무법인등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업무에 관한 책임은 해당 법무법인등과 연대한다고 볼 것이고,³²⁾ 법무법인등의 소속 변호사, 사무직원 및 변호사의 사무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거나 업무활동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법무법인등이나 변호사에게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32)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양벌규정은 직접적인 행위책임이 없는 자에게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무법인등에게 충분한 지휘·감독의무 등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데, 변호사는 포괄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그 업무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인 종업원과 달리 비교적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과태료 신설(안 제11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 · 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u> 2. <u>제89조의4제1항·제2항 또는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나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u> 3. <u>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u>

○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1호).

○ 현행법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법률사건을 대리하거나, 변론을 하는 소위 ‘몰래변론’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³³⁾ 이는

33)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퇴직한 법관이나 검사 등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변론활동을 통해 전관예우의 효과를 누리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 현행법은 변호사가 조세포탈 또는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몰래변론’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개정안에서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함, p. 34 참조)³⁴⁾ 이외의 사유로 변호사가 ‘몰래변론’을 하는 경우 이는 징계의 대상이 될 뿐인데,³⁵⁾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몰래변론’ 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률사건 수임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법원행정처는 변호인 선임서 제출과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는 입법취

34)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 7. (생략)

35)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 2. 제명 / 3. 3년 이하의 정직 /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에는 공감하나, 과거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2017. 3. 14.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입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하도록 한바 있으므로 개정안이 2017. 3. 14. 개정 취지와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³⁶⁾

문 의 처
02) 6788-5060

36) 법원행정처 의견회신(2024. 8.)

※ 참고자료

1.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u>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u>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u>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u>공개하여야 한다.</u>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① 삭제

-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 ③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2. 대통령경호처 차장
 3.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4. 제3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 ④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5. 소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제31조제1항제20호·제21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